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임의자 · 강승규 · 이달희
조지연 · 이인선 · 서일준
이종욱 · 임종득 · 박수민
이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,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, 제25조제13항 신설)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설치하는”을 “설치·운영하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설치·운영하는----- ----- ----- 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)	제25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)
① ~ ⑫ (생략)	① ~ ⑫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